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

(이학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13.

발의자 : 이학재 · 김도읍 · 박명재
엄용수 · 정갑윤 · 유승민
정성호 · 이종배 · 박덕흠
김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최근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보조금을 교부”를 “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